#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(2007.06.30)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(1976)에 관한

상설중재재판소 사건 번호 2018-55

메이슨 캐피탈 엘.피. (MASON CAPITAL L.P.)
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 (MASON MANAGEMENT LLC)
 (이하 '청구인')

대한민국 (이하 '피청구국') ('청구인' 및 '피청구국'의 집합은 '당사자들'로 칭한다.)

## 절차 명령 제 10호

## 중재판정부

Professor Dr. Klaus Sachs (의장중재인) The Rt. Hon. Dame Elizabeth Gloster Professor Pierre Mayer

> **사무국** 상설중재재판소

2022년 3월 9일

동 절차 명령은 다음에 명시된 절차 문제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록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,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한 지시사항을 명시하는 바,

##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명한다:

#### 1. 심리 장소 및 참석자

- 1.1 제 1.2 항 및 제 1.3 항에 따라 심리는 미국 620 8th Avenue, 34th Floor, New York, NY 10018 소재 뉴욕 국제중재센터(이하 "NYIAC")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.
- 1.2 중재인 The Rt. Hon. Dame Elizabeth Gloster 및 Professor Pierre Mayer 은 동 심리에 원격으로 참석한다.
- 1.3 심리 이전 또는 도중 기타 심리 참석자(들)의 원격 참석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, 공동 중재인의 원격 참석을 지원하고 심리의 일부를 원격 또는 혼합된 형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자 당사자들은 FTI 재판 서비스(이하 "심리운영진")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1.4 절차 명령 제 1 호 제 1 항에 따라 중재지(법적 본거)는 싱가포르로 유지한다.
- 1.5 2022 년 3 월 7 일까지 각 당사자의 변호인은 심리에 참석 예정인 전 참석자의 목록을 중재판정부, 상대 당사자 및 상설중재재판소에 전달한다. 당사자가 동 날짜 이후에 참석자 목록의 보완 또는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, 해당 당사자는 상설중재재판소와 상대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고지한다.

#### 2. 심리 일정 및 시간

- 2.1 중재판정부는 매일 뉴욕 시간 기준 오전 8:30 부터 오후 3:30 까지 / 런던 시간 기준 오후 12:30 부터 오후 7:30 까지 / 중앙유럽표준시 기준 오후 1:30 부터 오후 8:30 까지, 점심시간 (45 분), 커피휴식시간 (15 분) 2 회 및 기타 중재판정부에서 허용하거나 희망하는 기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유연성을 기반으로 운영된다. 심리는 중재판정부가 심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변동사항을 전제로 <u>부속서 1</u>의 심리 일정에 따라 운영된다.
- 2.2 각 당사자에게는 해당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제시할 동량의 시간이 합리적인 유연성을 기반으로 부여된다.
- 2.3 중재판정부 보조원은 경과 및 잔여 시간을 공식 기록한다.
- 2.4 당사자가 해당 당사자의 증인에 대한 직접 또는 재주신문 (절차 명령 제 1 호 제 7.3 항에 따른 직접 신문을 대신하는 당사자의 전문가 프레젠테이션 포함) 및 상대 당사자 증인의 반대 신문에 소비한 시간은 해당 당사자의 주장 입증 제시 시간에 포함된다. 합리적인 유연성을 기반으로, 당사자들의 변론 또는 증인신문 도중 중재판정부의 질의 및 중재판정부에 대한 답변에 소요되는 시간은 동 당사자의 주장 입증 제시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, 대신 중재판정부의 심리 시간에 포함된다.
- 2.5 심리 일정에서 일일 심리시간 중 0.5 시간은 중재판정부의 발언, 관리운영사항, 당사자들의 신청 또는 중재판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기타 절차문제 및 당사자의 신청서 또는 중재판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기타 절차 문제를 위해 예비하며, 또한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모든 추가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. 심리 중 상기에 소요된 시간은

양 당사자의 주장 입증 제시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2.6 당사자들은 시간 분배에 관한 모든 분쟁을 상호 해결하고자 노력한다. 동 분쟁이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, 중재판정부가 동 분쟁을 해결한다.

#### 3. 증인 및 전문가 신문

- 3.1 증인 신문 절차는 절차 명령 제 1 호 제 6.10 항 및 제 7.3 항에 명시한다.
- 3.2 절차 명령 제 1 호 제 6.12 항에 추가하여, 사실 증인은 심리 전에 (대면 또는 원격) 심리실에 입장할 수 없으며, 증언에 앞서 실시간 심리 중계에 참석하거나 속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다. 신문 이후에 사실 증인은 심리의 전 부분에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.
- 3.3 절차 명령 제 1 호 제 7.3 항에 따라, 양 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가 증인은 심리실에 언제든 참석 가능하다.
- 3.4 사실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중단되어 다음 심리 회기에서 이를 재개해야 하는 경우, 해당 사실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은 동 신문 종료 시까지 당사자,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과의 대화 또는 연락을 일체 금한다. 부속서 1 에 명시된 심리 일정에 따라, 당사자들은 사실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이 당일에 완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.
- 3.5 반대 신문을 요청 받은 증인은 코로나-19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코로나-19 와 관련된 여행 제한과 같은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회에 직접 대면 참석해야 한다. 증인이 원격으로 증언해야 하는 경우 (원격 심리의 경우 또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),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및 그 증인이 <u>부속서</u> 2 의 원격 참석자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.

## 4. 심리 자료

- 4.1 당사자는 절차 명령 제 1 호 제 8.4 항에 따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및 시연용 증거물을 심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.
- 4.2 절차 명령 제 1 호 제 8.4 항에 따라 시연용 증거물은 상대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.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고지될 필요 없다.
- 4.3 시연용 증거물 및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전자 사본은 모두진술 또는 종료진술 또는 각 증인 증언의 각 시작 시에 중재판정부 구성원, 상설중재재판소, 중재판정부, 중재판정부 보조원, 상대 당사자의 변호인, 법원 속기사 및 통역사에게 제공된다. 출력사본은 완전한 원격 심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 중재인, 중재판정부 보조원, 상대당사자(4 부), 법원 속기사 및 통역사(대면 참석으로 가정)에게도 출력사본을 제공해야 한다.
- 4.4 절차 명령 제 1 호 제 8.4 항에 따라 (신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 및 동 요청 관련 상대당사자의 의사표명 기회에 후속하여) 중재판정부가 승인한 경우가 아닌 한 심리에서 신규 문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. 당사자가 기록에 대한 신규 증거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서면으로 이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문서를 동 요청에 첨부할 수 없다.

### 5. 심리 묶음

- 5.1 전자 심리 묶음은 심리 운영진이 관리하는 심리 플랫폼을 통해 당사자들과 재판소 및 신문 중인 증인이 접근 할 수 있는 기록상의 모든 문서로 구성된다.
- 5.2 중재판정부는 심리 종료 직후부터 1 년의 기간 동안 심리 운영진이 관리하는 심리 플랫폼의 전자 묶음에 대한 접근권한을 유지한다.
- 5.3 전자 심리 묶음 사본이 포함된 USB 저장장치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임명조건 제 4 항 및 제 9.2 항에 명시된 주소로 중재판정부 및 상설중재재판소의 각 구성원에게 발송된다.
- 5.4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물량산출 전문가에게 출력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 및 전문가에게 신문 중 참조된 문서의 출력사본을 제공해야 한다.

## 6. 최종진술, 심리 후 보고 및 비용제출

- 6.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당사자들이 2022 년 3 월 26 일 토요일에 구두 최종진술의 발표 여부를 심리에서 결정한다.
- 6.2 추가 서면 제출은 심리 종료 시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의거한다.
- 6.3 비용 명세서 제출일은 심리 종료 시 결정된다.

#### 7. 음향 녹음 및 전사

- 7.1 당사자들은 동 심리에서 David Kasdan 이 법원 속기사로 활동함에 동의한다. 상설중재재판소는 Mr Kasdan 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7.2 절차 명령 제 1 호 제 8.2 항 및 제 8.3 항에 의거 상설중재재판소는 심리의 음향녹음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들이 동 녹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 상설중재재판소는 LiveNote 또는 유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시간 속기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사를 준비한다. 각 심리일 말미에 당사자들에게 (초안 또는 최종안 형태의) 당일 속기록이 제공된다. 당사자들은 2022 년 3 월 11 일까지 다음을 제출한다: (i) 심리실 내 필요한 실시간 연결의 수; 및 (ii) 각일 속기록의 전자우편 배포목록에 추가를 희망하는 모든 수신인의 세부정보.
- 7.3 당사자들은 심리 종료 직후 21 일 이내에 속기록에 대한 모든 수정 제안 (해당하는 경우 번역 포함)의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. 합의된 수정안은 법원 속기사가 속기록(이하 "수정 속기록")에 입력한다. 당사자들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며 중재판정부가 채택한 모든 수정 사항은 법원속기사가 수정 속기록에 입력한다.

### 8. 통역

- 8.1 상설중재재판소는 Professor Kim 및 Mr Cho 의 증언이 한국어에서 영어로, 또한 동 증인들에게 제시되는 모든 질문이 영어에서 한국어로 순차 통역되도록 조치한다.
- 8.2 임명조건 제 8.9 항에 의거 당사자들은 한국어로의 통역을 생략하는데 동의한다.

### 9. 투명성

- 9.1 절차 명령 제 1 호 제 9.3 항에 따라, 상설중재재판소는 NYIAC 내 공개 시청실을 준비한다. 상설중재재판소는 공개 시청실에서 심리 내용이 지연 방송되도록 조치하고, (절차 명령 제 1 호 제 9.4 항에서 정의하는) 보호정보로 지정된 일체의 정보가 논의되는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에 한 쪽 당사자가 주 심리실 내 진행에 차질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요청하는 경우 방송을 중단한다.
- 9.2 심리 후 상설중재재판소는 심리 속기록을 상설중재재판소 누리집에 게시한다. 속기록 게재에 앞서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에게 동 속기록을 제공하여 당사자들이 보호정보의 수정을 제안 할 수 있도록 한다. 당사자들은 해당 정보가 심리에서 보호정보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정보의 수정을 제안 할 수 있다.
- 10. 코로나-19 관련 지침
- 10.1 심리 참석자들은 부속서 3의 코로나-19 프로토콜을 준수한다.
- 10.2 상기 제 1.3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, 당사자들은 코로나-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 또는 기타 참작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대면 참석이 불가한 심리 참석자가 심리 운영진의 심리 플랫폼을 통해 원격 참석 가능하도록 심리 운영진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중재지: 싱가포르

(서명)

Professor Dr. Klaus Sachs (의장중재인) 중재판정부 대표

## 부속서 1 - 심리 일정 [뉴욕 시간 기준]<sup>1</sup>

2022 년 3 월 21 일 월요일	
모두발언 및 기타 관리운영사항 (중재판정부)	08:30 - 08:45
모두변론(청구인)	08:45 - 10:15
휴식시간	10:15 - 10:30
모두변론 (청구인)	10:30 - 11:45
점심시간	11:45 - 12:30
모두변론 (피청구국)	12:30 - 14:00
휴식시간	14:00 - 14:15
모두변론 (피청구국)	14:15 - 15:30
2022 년 3월 22일 화요일	
Mr Ken Garschina 신문	08:30 - 10:00
휴식시간	10:00 - 10:15
Mr Ken Garschina 신문	10:15 - 11:15
점심시간	11:15 - 12:00
Professor Kim 신문	12:00 - 13:30
휴식시간	13:30 - 13:45
Professor Kim 신문	13:45 - 15:15
2022 년 3 월 23 일 수요일	
Mr Young-gil Cho <sup>2</sup> 신문	08:30 - 10:30
휴식시간	10:30 - 10:45
Mr Young-gil Cho 신문	10:45 - 12:45
[전문가 증거 개시 전 휴식시간]	
2022 년 3월 24일 목요일	
Dr Duarte-Silva 프레젠테이션	8:30 - 10:15
Dr Duarte-Silva 신문	
휴식시간	10:15 - 10:30

청문회 일정에 명시된 시간은 반드시 참고용이며 적절하게 조정이 가능하다. 일과 중 중재판정부가 증인 또는 변호인에게 질문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일일 일정이 연장될 수 있다.

<sup>2 2022</sup> 년 2월 23일, 피청구국은 Mr Cho 가 2022 년 3월 21일 예정된 한국 내 중요한 일정을 사유로 2022 년 3월 24일 목요일(이후 2022년 3월 23일 수요일로 조정)까지 대면 심리 참석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. 제안된 일정은 남은 절차에 차질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Mr Cho 의 일정을 수용하도록 시도한다.

10:30 - 12:00	
12:00 - 12:45	
12:45 - 14:30	
14:30 - 14:45	
14:45 - 16:15	
2022 년 3 월 25 일 금요일 <sup>3</sup>	
8:30 - 10:00	
10:00 - 10:15	
10:15 - 11:45	
11:45 - 12:30	
12:30 - 14:00	
14:00 - 14:15	
14:15 - 15:45	
15:45 - 16:00	
16:00 - 16:15	
2022 년 3 월 26 일 토요일	

<sup>&</sup>lt;sup>3</sup> 청구인들은 제한된 증거 범위를 감안할 때 Professor Wolfenzon 과 Professor Bae 에게 할당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지 않으나, 이를 기반으로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한다.

### 부속서 2 - 원격 참석자 프로토콜

## 원격 참석자 준비사항

- 1.1 당사자들은 각 원격 심리 참석자가 해당 참석자의 장비 (예: 노트북, 데스크톱 컴퓨터, 웹캠, 헤드폰, 인터넷 용량)와 심리 운영진의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확인하도록 한다.
- 1.2 당사자들은 각 원격 심리 참가자가 위치한 원격 장소에 끊김 없는 심리 플랫폼 사용을 지원하는 적절한 인터넷 대역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, 대역폭문제 또는 기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동 프로토콜을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중재판정부가 상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.
- 1.3 원격 참석자는 반드시 조명이 잘 비추는 중간색의 산만하지 않은 배경을 바탕으로 (가능한 경우) 참석자의 머리와 어깨만 보이도록 카메라를 배치해야 한다. (사실 증인 및 전문가 증인 포함) 발언하는 원격 참석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 또는 그들이 증언하는 원격장소의 녹음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"가상 배경", 필터를 사용할 수 없다. 참가자 뒤의 밝은 창에서 비추는 빛 등의 역광은 가시성을 상당히 감소시키므로 피해야 한다. 참가자는 실질적인 배경 잡음이 없는 장소에서 참석하도록 노력한다.

#### 절차적 보호

- 1.4 당사자들은 심리 시작 시 심리에 참석하는 각 원격 참석자를 발표하고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.
- 1.5 당사자들과 심리 운영진은 원격 증인이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이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심리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1.6 원격 증인(전문가 증인 포함)은 증인이 증언을 제공하거나 절차를 보거나 듣는 장소에 증인 이외의 타인이 없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. 해당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동 증인(또는 전문가 증인)은 해당인의 입회, 입회 사유 및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.
- 1.7 원격 증인은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(휴식 시간 포함) 증인의 증언 주제에 관해, 어떤 수단으로도. 누구와도 의사 소통할 수 없다.
- 1.8 원격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동 증인은 (의무는 아니지만) 증인의 진술 또는 전문가 보고서의 표시되지 않은 출력사본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증언하는 동안 그 공간 내의 어떠한 문서 (모든 종류의 전자 또는 출력사본)도 소지할 수 없다. 원격 증인의 증언 중에 신문하는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 자료 또는 원격 증인본인의 서면 진술 또는 전문가 보고서 이외의 문서를 열람하는 경우, 동 증인은 해당문서를 식별해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동 문서의 전시를 요청할 수 있다.
- 1.9 각 원격 증인은 증거를 제공하는 동안 휴대 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 각 원격 증인은 증언 이전에 그리고 증언 과정에서 연결이 실패하는 경우 그들과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심리 운영진에게 본인의 상세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연결에 실패하는 경우에 원격 증인은 심리 운영진에 의한 동 증인과의 통신을 복구를 위해 휴대 전화를 켜는 것이 허용된다.
- 1.10 중재판정부는 원격 증인의 장비의 적합성 및 원격 증인의 장비 친숙도 관련 원격

상설중재재판소 사건 번호 2018-55 절차 명령 제 10 호 10 쪽중 제 9 쪽

증인에게 이를 문의한다. 특히 중재판정부는 모든 참석자에게 (a) 원격 증인의 주변 환경 및 (b) 원격 증인이 증언할 장소의 책상 또는 탁자 위의 물품을 확인하고자 원격 증인에게 웹캠을 이동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11 심리 동안 당사자의 대표가 증거 문서, 시연용 증거물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참조하는 경우 심리 운영진은 해당 문서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화면 공유 또는 문서 표시 방식을 통해 원격 참가자에게 제공한다.

### 부속서 3 - 코로나-19 프로토콜

#### 1. 코로나-19 백신접종 및 검사

- 1.1 심리 초일, NYIAC 에 대면 참석하는 모든 심리 참석자는 상설중재재판소가 요구하는 다음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:
  - (a) 유럽의약청 (EMA, European Medicines Agency) 또는 세계보건기구 (WHO, World Health Organisation)가 긴급사용목록을 통해 승인한 예방접종과정을 통한 완전한 예방접종증명서; 또는
  - (b) 참석자가 심리에 최초 등장하기 전 최대 72 시간 이내에 실시한 음성 PCR 검사 결과.
- 1.2 심리 참석자는 코로나-19 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심리에 직접 참석할 수 없다. 대면 참석하는 모든 심리 참석자에게는 각 심리일 아침, 당일 회기 시작에 앞서 본인에게 일체의 코로나-19 증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.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대리인은 각각의 청구인 및 피청구국 전체 대표단을 대신하여 상기 확인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.

#### 2.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심리실 에티켓

- 2.1 동일 대표단의 참석자를 제외하고 각 참석자는 NYIAC에 참석하는 동안 타 참석자와 최소 1.5 미터의 거리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.
- 2.2 심리실 또는 기타 공동공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참가자는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.

### 3. 건강확인서

3.1 모든 심리 참석자는 심리일마다 뉴욕법이 요구하는 모든 건강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.